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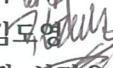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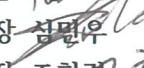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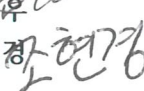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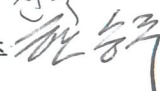


<b>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</b>		일 시	2014.12.29(월) 15:00~16:20
		장 소	공대 206호 회의실
제 목	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		
참석위원	기획처장 오이석  학생처장 이선우  사무처장 전성표  교학관리처장 김도현  (서울)총학생회장 심필우  (서울)법과대 학생회장 신진욱  (세종)총학생회장 조현경  (세종)과학기술대 학생회장 한승주 		
불참위원			
회의내용	<p>           ■ 위원장 (기획처장 오이석) :                등록금심의위원 총 8명이 전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               2015학년도 제1차 회의 시작을 선언함.           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소개 및 상호 인사            ② 위원장이 총장을 대신하여 등록금심의위원 임명장을 수여함.            ③ 외부 전문가 위원은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심재익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의 동의를 구함.            ■ 사무처장 : 외부전문가위원 심재익 위원의 경력을 소개함.            ■ 서울 총학생회장 : 추천경위,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청함.            ■ 사무처장 : 대한잡사회 회장, 본교 부속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등 추천 경위와 기타 질의에 답변함.            ■ 기획처장            ① 학생위원들의 기타 의견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금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추천함.            ② 외부전문가위원은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부터 참석하기로 함.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회 의 내 용</b></p> <p>           ■ 기획처장 : 2014학년도에는 12차에 걸쳐 등록금심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서로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            ■ 사무처장 : 실무위원을 두어 사전에 접촉하여 자료 검토, 질의 응답 등 실무협의를 하고 다 함께 협의하여야 할 주요사안이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등심위 횟수는 7~8차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함.            ■ 서울 총학생회장 : 학생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신속하게 제공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학교측의 협조를 요청함.         </p>		

회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생처장 : 학교측은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화통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소모적인 회의진행을 피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요청함.</li> <li>■ 교학관리처장 : 실무선에서 원활한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 의견을 피력함.</li> <li>■ 서울 총학생회장 :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 ‘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’고 규정되어 있음.        ②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.6%로 집계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공고에 의거 등록금 인상율은 2.4% 이하로 제한됨.        ③ 또한,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, 학생측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견을 개진함.        ④ 학교측에 요청자료를 제시하며 항목별로 간단한 설명을 부연함.</li> </ul> <p>◎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학생위원 요청 자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등록금 책정에 따른 학사 일정</li> <li>2) 2015학년도 가 예산안</li> <li>3) 2014학년도 가 결산안 [집행률 반드시 포함]</li> <li>4) 2013학년도 학교 회계 예·결산서</li> <li>5) 2015학년도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</li> <li>6) 2013학년도, 2014학년도 적립금 사용내역</li> <li>7)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내역 [펀드 등 투자 정보]</li> <li>8) 법인채무성 관련 자료 : 법정부담금 및 대학 법정부담금액 / 법인전입금 비율,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, 학교운영경비 부담률</li> <li>9) 계열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 근거 자료</li> <li>10)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합의사항 중 ‘2-나.’의 ‘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검토 사항’ 에 대한 집행 내역        - 2-나. 교육환경개선 예산 중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9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검토·진행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2014. 03. 01. 부터 2014. 12. 31.까지 전액 집행토록 한다.</li> <li>11)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합의사항 중 ‘2-라.’의 ‘학생지원비 예산 현실화’ 관련 결과 자료        - 2-라. 서울캠퍼스·세종캠퍼스의 각급 학생회에 지원되는 학생지원비 예산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며 예산 증액의 규모는 학생대표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, 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</li> <li>12) 대학 입학금 산정 근거 [2014년 기준 99.6만원]</li> </ol>
------	--

회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획처장 : 학생측의 요청자료에 대해 시기 및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자료들을 추후 제공하도록 함.</li> <li>■ 사무처장 : ① ‘계열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 근거’ 및 ‘대학 입학금 산정 근거’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없음.        ② 계열별로 공간사용율, 실험실습비, 기자재 구입, 교원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계열별 등록금 차등이 불가피하게 발생됨.        ③ 현재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근거가 되는 원가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계열별, 전공별, 학년별 등 등록금의 차등 징수 자료는 없음.</li> <li>■ 서울 총학생회장 : ①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금의 경우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징수절차, 액수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 없음.        ② 그러나, 사립대 중에서 4위에 해당하고 신입생에게 큰 부담이기에 지적함.</li> <li>■ 사무처장 : ①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고        ② 국내의 규모가 큰 대학이나 외국에서는 본인이 입학하는 대학에 많은 기여와 기부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고, 이를 통해 대학이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.</li> <li>■ 학생처장 : 과거 사립학교 시설기준령에 의하면 계열별로 학생1인당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고,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음.</li> <li>■ 교학관리처장 : 학생 1인당 건물사용면적 및 실습비와 기자재구입의 비용을 감안하면 차등 요인이 존재하며 학생회에서도 자료를 통해 검토해볼 것 권고함.</li> <li>■ 서울 총학생회장 : 2015학년도 가예산 자료가 언제쯤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2013학년도 결산서 설명을 요청함.</li> <li>■ 기획처장 :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일정,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학생지원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함.</li> <li>■ 서울 총학생회장 :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하며 2015학년도 가예산 및 2014학년도 가결산 자료를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함.</li> <li>■ 사무처장 : ① 서울총학생회장이 요청하는 2013,2014학년도 예·결산 자료는 2015등록금 책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됨.        ②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1,2유형과 정부지원금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한편 행정적 제재조치도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.        ③ 그렇다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는 불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      ④ 등록금은 물가 인상을 2.4% 이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학교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됨.</li> </ul>
------	---

회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종 총학생회장 : 등록금 차등 책정과 관련하여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하며 실습기자재 연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.</li> <li>■ 교학관리처장 : 하드웨어 기자재의 노후화 및 연식도 문제지만 최근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단순히 기자재의 연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향후 얼마나 기자재 구입에 투자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관점임.</li> <li>■ 사무처장 : 자료제공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교학협의회를 통해서 추후 논의 하였으면 좋겠음.</li> <li>■ 사무처장 : 차기 회의일정을 정하고 폐회를 요청하며, 차기 회의 날짜는 1월 7일 수요일이 좋겠다고 제안함.</li> <li>■ 기획처장 :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제2차 회의 일정은 2015.1.7.(수) 15:00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.</li> </ul>		
협의 및 의결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차기 회의일정 : 2014. 1. 7.(수) 15:00 공대(K동) 206호 회의실</li> <li>2. 학생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검토한 후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전달하기로 함.</li> <li>3.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'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3(회의록 공개)'에 의거하여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.</li> </ol>		
특기사항		작성년월일	2015. 1. 5
회의록 배부처		작성자	재무팀 정 종 혁